

관광통역안내사 필기 관광국사 교재 수정

p245 문항 154 정답 수정

154. (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일제는 근대적 토지 소유 관계 확립을 명분으로 ( )을/를 실시하여 식민지 경제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 ① 방곡령                      ② 회사령
- ③ 국가 총동원법            ④ 토지 조사 사업

해설 일제는 1910년대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하면서 근대적인 토지 제도 확립이라는 미명 아래, 토지 소유권의 확인 과정에서 토지를 약탈하고 지세를 수탈하였다.

정답 ④

## 관광통역안내사 필기 관광자원해설 교재 수정

### p254 03. 자연공원별 내역 다음 아래 밑줄 부분 수정

(1)국립공원(전 국토의 4.1%, 해면 포함 6.64%)

①지정 : 환경부 장관

②현재 23곳 지정(산악형 18곳, 해안 / 해상형 4곳, 사적형 1곳)

③1호 : 지리산국립공원(1967년), 22호 : 태백산(2016.4), 23호 팔공산(2023년)

### p254 03. 자연공원별 내역 > (2)도립공원, 3)군립공원 내용 중 아래 밑줄 부분 수정

(2)도립공원(전 국토의 1.13%)

①지정 : 시도지사, 현재 30곳 지정

②1호 : 금오산도립공원(1970, 경북 구미)

2호 : 남한산성(1971)

~~29호~~ : 별교 갯벌(2016.1)

~~30호~~ : 불갑산(2019)

철원DMZ성재산도립공원(2023.7)

③갯벌 도립공원 : 신안증도, 무안, 별교

④제주도 내 도립공원 6곳(마라도, 성산일출봉, 서귀포, 추자도, 우도, 곶자왈)

(3)군립공원(전 국토의 0.24%)

①지정 : 시장 / 군수, - 현재 27곳 지정

②1호 : 강천산 군립공원(1981, 전북 순창), 2호 : 천마산

p259 (22) 태백산 내용 뒤에 (23)팔공산 국립공원 신규 내용 추가, 번호체계수정

(22)태백산

- ①2016년 지정
- ②삼척시, 정선군, 영월군, 태백시, 봉화군에 걸쳐 있음
- ③장군봉, 문수봉, 함백산, 매봉산, 금대봉, 대덕산
- ④천제단(중요민속문화재) : 하늘에 제사, 함백산 정암사(적멸보궁)
- ⑤검룡소(명) : 한강의 발원지, 황지 : 낙동강 발원지
- ⑥천연기념물 : 주목 군락, 산양, 하늘다람쥐, 원앙, 검독수리, 두견이, 소쩍새, 정선 정암사 열목어 서식지, 태백 용연동굴(강원도지방기념물)
- ⑦태백 8승 : 문수봉, 천제단, 주목군락, 일출, 황지, 검룡소, 구문소, 용연동굴
- ⑧석탄박물관

(23)팔공산 국립공원

①2023년 지정

- ②대구광역시 동구와 군위군, 경북 경산시, 영천시, 칠곡군 등 경계에 위치
- ③고려시대까지 공산으로 불리다 조선시대 팔공산으로 개칭
- ④92점의 문화자원 분포
- ⑤조계종 제9교구 본사(동화사) 및 제10교구 본사(은해사) 위치
- ⑥불교 역사·문화유산의 중추적 거점(보물 431호 팔공산 관봉 석조여래좌상 소재지)

(24) 국립공원 인근 스키장 현황

- ①설악산, 오대산 : 용평리조트 ~

p272 위에서 1번째 줄 이하 아래 밑줄 내용 수정 / (8)~(10) 아래 밑줄 내용 추가

06. 유네스코 문화유산(등재 순서, 16건)

(1)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창덕궁, 수원 화성, 경주 역사 유적지구,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조선왕릉(40기), 하회/양동마을, 남한산성, 백제 역사 유적지구, 산사(7개), 서원(9개), 가야고분군, 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 한국의 갯벌

8) 가야고분군 : 경북 고령, 경남 김해, 함안, 창녕, 고성 등

9) 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 :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성산일출봉 응회환의 3개 구역

10) 한국의 갯벌 : 서천갯벌, 고창갯벌,新安개벚, 보성-순천 갯벌 등

■ 유네스코에 등재된 시기(문화유산)

1995년	석굴암과 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1997년	창덕궁, 수원 화성
2000년	경주 역사유적지구, 고인돌 유적(강화, 화순, 고창),
<u>2007년</u>	<u>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u>
2009년	조선왕릉(40기)
2010년	하회마을과 양동마을
2014년	남한 산성
2015년	백제 역사유적 지구
2018년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2019년	한국의 서원
<u>2021년</u>	<u>한국의 갯벌</u>
<u>2023년</u>	<u>가야고분군</u>

p272 아래에서 2번째 줄 이하 아래 밑줄 내용 수정

08. 유네스코 기록유산(등재 순서, 18건)

(1) 훈민정음 해례본, 조선왕조실록, 직지심체요절, 승정원일기, 조선왕조의궤, 해인사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 동의보감, 일성록, 5.18 기록물, 난중일기, 새마을운동 기록물, 유교책판, 이산가족찾기 기록물, 조선왕조 어보/어책,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통신사 기록물, 4.19 혁명 기록물,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 유네스코에 등재된 시기(기록유산)

1997년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2001년	직지심체요절, 승정원일기
2007년	조선왕조의궤, 해인사 대장경판 및 제경판
2009년	동의보감
2011년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 일성록
2013년	난중일기, 새마을 운동 기록물
2015년	유교책판, KBS 이산가족 찾기 기록물
2017년	조선 왕조 어보/어책,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통신사 기록물
<u>2023년</u>	<u>4.19 혁명 기록물, 동학농민혁명 기록물</u>

p273 위에서 13번째 줄 이하 아래 밑줄 내용 수정

09. 유네스코 무형유산(등재 순서, 22건)

종묘 제례 및 종묘 제례악, 판소리, 강릉단오제, 남사당놀이, 강강술래, 영산재,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 처용무, 가곡, 대목장, 매사냥, 줄타기, 택견, 한산모시짜기, 아리랑, 김장문화, 농악, 줄다리기, 제주해녀문화, 씨름, 연등회, **한국의 탈춤**

■ 유네스코에 등재된 시기(무형유산)

2001년	종묘제례와 종묘제례악
2003년	판소리
2005년	강릉 단오제
*2008년	‘종묘제례와 종묘제례악, 판소리, 강릉 단오제’를 변경된 명칭인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
2009년	남사당 놀이, 강강술래, 영산재,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 처용무
2010년	가곡, 대목장, 매사냥
2011년	줄타기, 택견, 한산 모시짜기
2012년	아리랑
2013년	김장문화
2014년	농악
2015년	줄다리기
2016년	제주 해녀 문화
2018년	씨름
2020년	연등회
<b>2022년</b>	<b>한국의 탈춤</b>

p274 위에서 2번째 줄 이하 아래 밑줄 내용 삭제

10. 유네스코 잠정 목록

강진 도요지, ~~서남해안 갯벌~~, 염전, 대곡천 암각화군, 설악산, 남해안 공룡 화석지, 중부 내륙 산성군, 아산 외암마을, 순천 낙안읍성, 우포늪, 한양 도성, ~~김해/함안 가야 교분군, 교령 대가야 교분군~~

p313 문항 17번 해설 및 정답 수정

17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곳은?

- ① 주왕산 ② 월출산 ③ 가야산 ④ 팔공산

해설 팔공산은 2023년 5월 팔공산 국립공원으로 승격되었다.

정답 정답 없음 (본문 259페이지 참조)

p316 문항 26번 지문 ① 밑줄 수정

26. 우리나라 국립공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산악형 18개소, 해상형 4개소, 사적형 1개소가 지정되었다.  
② 최초의 국립공원은 지리산이다.  
③ 국립공원의 지정권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다.  
④ 경주는 사적형 국립공원이다.

해설 국립공원의 지정권자는 환경부 장관이다.

정답 ③

p323 문항 60번 해설 및 정답 수정

60. 우리나라의 세계 유산 중 무형 유산으로 등록되지 않은 것은?

- ① 아리랑 ② 택견 ③ 줄타기 ④ 씨름

해설 유네스코 무형유산(등재 순서, 22건)

종묘 제례 및 종묘 제례악, 판소리, 강릉단오제, 남사당놀이, 강강술래, 영산재,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 처용무, 가곡, 대목장, 매사냥, 줄타기, 택견, 한산모시짜기, 아리랑, 김장문화, 농악, 줄다리기, 제주해녀문화, 씨름, 연등회, 한국의 탈춤

정답 정답없음

관광통역안내사 필기 관광법규 교재 수정

p344 (2) 관련 용어 장리 내용 중 아래 밑줄 부분 수정(개정)

(2) 관련 용어 정리

관광사업	
관광사업자	
기획여행	
회원	
<b>소유자</b>	단독 소유나 공유(共有)의 형식으로 관광사업의 일부 시설을 관광사업자로 부터 분양 받은 자를 말한다.
관광지	
관광단지	
민간개발자	
조성계획	
지원시설	
관광특구	
여행이용권	
문화관광해설사	

p345 (1) 그룹별 개념 > ㉔관광숙박업 > ㉓ 내용 중 아래 밑줄 부분 수정(개정)

02. 관광사업의 개념

(1) 그룹별 개념

①여행업	
②관광숙박업	㉓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 시설(이하 부대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 ㉔ 휴양 콘도미니엄업(이하 콘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b>소유자</b> ,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③관광객 이용시설업	
④국제회의업	
⑤카지노업	
⑥유원시설업	
⑦관광편의시설업	



## p350 하단 법령 개정으로 밑줄 내용 추가(법령개정)

### 02. 사업별 등록 기준

#### (1)여행업

- ① 자본금 보유 의무 : 종합여행업 5천만 이상, 국내외여행업 3천만 이상, 국내여행업 1천5백만 이상 (다만,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750만원 이상으로 한다)

## p351 하단 밑줄 부분 수정

### (2)관광숙박업

#### ①호텔업

- ①소형호텔 : 20실~30실 미만, 부대시설 면적이 건축연면적의 50% 이하, 조식제공, 2종류 이상의 부대시설, 단란·유흥주점·사행행위시설 없을 것

## p351 하단 밑줄 부분 내용 추가(법령 개정)

### ②콘도업

- ⑦객실 30실 이상, 취사 가능, 매점 또는 간이 매장, 문화체육공간 1개소 이상
  - Ⓐ 다만,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또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20실 이상으로 한다)
  - Ⓑ 문화체육공간은 공연장·전시관·미술관·박물관·수영장·테니스장·축구장·농구장, 그밖에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문화체육공간을 1개소 이상 갖춘 것.
  - 다만, 수개의 동으로 단지를 구성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관광지·관광단지 또는 종합휴양업의 시설 안에 있는 휴양콘도미니엄의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⑧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보유(분양 또는 회원 모집할 경우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확보)

p356 하단 ⑤사업계획 승인 시설의 착공/준공 기한 밀줄 내용수정(개정)

⑤사업계획 승인 시설의 착공/준공 기한

**1. 2011년 6월 30일 이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가. 착공기간: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4년**

**나. 준공기간: 착공한 날부터 7년**

**2. 2011년 7월 1일 이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만,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해당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기간에 따른다.**

**가. 착공기간: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나. 준공기간: 착공한 날부터 5년**

p416 문제 81번 삭제

p362 아래 (8) 장애인의 편의제공 아래 밀줄 내용 신규 추가(개정)

(7)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①장관의 업무

②포함 사항

㉠유원시설업 현황

㉡보험가입

㉢안전관리자 정보 등

**(8) 장애인의 편의제공**

**- 국가 및 지자체는 장애인을 위해 시설설치 및 편의시설 확충에 비용 지원**

p367 관광펜션업 다음 아래 밀줄 부분 수정(개정)

관광펜션업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b>4층</b> 이하의 건축물일 것 ㉡객실이 30실 이하일 것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는 것 ㉣바비큐장 등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1종류 이상의 이용시설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하여 외국어 안내표기를 할 것
-------	--

p368 아래에서 8번째 줄에 ③지역별 관광협회 > ㉠ 밀줄 내용 신규 추가(개정)

③지역별 관광협회

㉠설립 절차 : 시도지사의 설립허가

㉡설립 단위 : 시도(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 필요시 지부를 둘 수 있다.

㉢주요 업무 : 장관 또는 지자체의 위탁 업무 수행

**㉣시도지사는 조례에 따라 예산으로 지원 가능**

**p379 (4)관광지 등 지정의 실효 및 취소 등 뒤에 (5) 밑줄 내용 신규 추가(개정)**

(4)관광지 등 지정의 실효 및 취소 등

- ㉞지정고시 후 2년 이내에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이 없으면 지정의 효력 상실
- ㉟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 승인고시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조성계획의 승인의 효력 상실(이로부터 2년 이내 조성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으면 지정의 효력 상실)
- ㊱시도지사의 승인 취소 또는 개선 명령 : 민간개발자가 사업중단 등으로 환경/미관을 해칠 경우
- ㊲위 ㉞, ㉟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1년의 범위에서 1차례 연장 가능

(5) 입장료 징수와 사용

- ㉞ 징수대상 범위 및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
- ㉟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 관광객에게 환급할 경우 지자체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p384 맨 하단 (16) 일과 휴양의 연계관광산업의 육성 아래 밑줄내용 신규추가(개정)**

(16) 일과 휴양의 연계관광산업의 육성

- ㉞ 지역관광과 기업의 일·휴양연계제도 연계하여 관광인프라 조성
- ㉟ 장관과 지자체장은 지원한다

**p388 아래 밑줄부분 수정 (개정)**

(5)출국 납부금

- ①납부 대상자 : 공항과 항만을 통해 출국하는 자
- ②납부 금액 : **공항 7천 원**, 항만 1천 원
- ③납부 대상 제외자
  - ㉞외교관, 승무원, **12세 미만인 어린이**
  - ㉟입양 어린이와 호송인, 외국군인 및 군무원(한국주재)
  - ㊱입국 거부되어 출국하는 자, 강제 출국 외국인
  - ㊲공항 통과 여객 중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출국하는 여객
    - ㉞항공기 탑승이 불가능하여 당일이나 그 다음날 출국하는 경우
    - ㉟공항이 폐쇄되거나 기상악화로 인한 출발 지연
    - ㊱항공기의 고장, 납치, 긴급환자 발생 등으로 불시착한 경우
    - ㊲관광을 목적으로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24시간 이내에 다시 돌아오는 경우
- ④납부금 부과·징수업무 위탁
  - ㉞여객선 : 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공사
  - ㉟항공기 : 공항운영자(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 ⑤납부금에 대한 이의 제기 : 60일 이내 신청, 장관은 15일 이내 결과 통지

p393 다음 아래 밑줄 내용 수정(밑줄 부분 수정, ⊙ 내용 삭제) (개정)

02. 용어의 정의

(1)국제회의

①개념 : 상당수의 외국인이 참가하는 회의(세미나, 토론회, 전시회 등 포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

②개최 기관의 유형별 기준

㉠국제기구나 국제기구에 가입한 기관이 개최하는 회의일 경우

ⓐ3개국 이상의 외국인 참가

ⓑ회의 참가자가 100명 이상이고 외국인 50명 이상

ⓒ2일 이상 진행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이 개최하는 회의일 경우

ⓐ회의 참가자 중 외국인이 150명 이상

ⓑ2일 이상 진행

㉢국제기구, 기관, 법인 또는 단체가 개최하는 회의일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확산으로 외국인이 회의장에 직접 참석하기 곤란한 회의로서 개최일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내일 것

ⓑ회의 참가자 수, 외국인 참가자 수 및 회의일수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p397 다음 아래 밑줄 내용 수정(개정)

2)지정권자

시도지사

①지정 기준

㉠지정 대상 지역 내에 전문회의시설이 있을 것

㉡지정 대상 지역 내에서 개최된 회의에 참가한 외국인이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기준 5천 명 이상이거나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3년간 평균 5천 명 이상일 것

㉢지정 대상 지역에 아래 시설이 각 1개 이상 있을 것

ⓐ관광숙박업의 시설(100실 이상의 객실)

ⓑ대규모점포

ⓒ공연장(300석 이상)

## p398 다음 아래 밑줄 내용 수정(개정)

### 02. 국제회의집적시설

#### (1)지정권자

국제회의집적시설은 지자체 또는 시설업자가 신청하고, 장관이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그리고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2)관련 절차

##### ①대상 시설

㉠관광숙박업의 시설로서 100실 이상의 객실을 보유한 시설 (「관광진흥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의 4성급 또는 5성급으로 등급결정을 받은 호텔업의 경우에는 30실) 이상의 객실을 보유한 시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시설 내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300석 이상의 객석을 보유한 공연장

## p457 21번 문항 정답 수정

21 관광진흥개발기금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여를 신청한 경우 또는 대여를 받은 경우’에 관한 제재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장관은 기금의 대여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그 대여 신청을 거부한다.
- ② 장관은 기금의 대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대여를 취소한다.
- ③ 장관이 지출된 기금을 회수할 때는, 지출된 기금의 전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 ④ 기금을 대여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기금을 대여 받을 수 없다

정답 ③, ④ 로 수정 (교재 392 페이지 본문 내용 참고)

## 관광통역안내사 필기 관광학개론 교재 수정

### p588 문항 9번 정답 수정

09. 국내 크루즈 산업의 발전방안으로 옳은 것은?

- ① 크루즈 여행일수를 줄이고 특정 계층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상품의 가치를 높인다.
- ② 계절적 수요에 상관없이 정기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 ③ 특별한 목적이나 경쟁력 있는 주제별 선상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체험형 오락거리가 풍부한 여행상품으로 개발해야 한다.
- ④ 까다로운 입.출항 수속절차를 적용해 질 좋은 관광상품이라는 인식을 심어준다

정답 ③

### p588 문항 10번 정답 수정

10. 여행상품 가격결정요소 중 상품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 ① 출발인원 수      ② 광고.선전비
- ③ 교통수단 및 등급   ④ 식사내용과 횟수

정답 ②

### p589 문항 13번 보기 밑줄부분 추가

13. A는 국제회의업 중 국제회의기획업을 경영하려고 한다. 국제회의기획업의 등록 기준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
|--|
| ㄱ. 2천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이 있을 것       |
| ㄴ.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
| ㄷ.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
| ㄹ. 옥내와 옥외의 전시면적을 합쳐서 2천제곱미터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③